

[] 배 상 금 등 동의 및 청구서
[] 배상금 임시지급금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:	접수일:	처리기간: 30일
-------	------	-----------

- 신청인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([]제12조 []제17조)에 따라 ([]배상금등 지급결정 []배상금 임시지급 결정)에 동의하고, ([]배상금등 []배상금 임시지급금)을 받고자 합니다.
-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(「민법」 제480조제2항,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).
-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 4·16세월호참사,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·손실 등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.

결정번호	제 호	결정일:
결정주문		

승선자 (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) * 해당되는 경우 작성	성명:	생년월일:
	주소:	
신청인 (신청인대표자)	성명:	생년월일:
	주소:	
	승선자와의 관계: 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
대리인 (선임한 경우)	성명:	생년월일:
	연락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
지급계좌	예금주:	은행명:
	계좌번호:	청구금액: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신청인(신청인대표자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2. 신청인(신청인대표자)의 배상금등(배상금 임시지급금)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-----	--